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8. 11 선고 2020가단20904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중중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

피고(선정당사자)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준

변 론 종 결 2021. 6. 23.

판 결 선 고 2021. 8. 11.

주 문

1. 원고에게, 피고(선정당사자) B 및 선정자 C, D, E,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5888/936303 지분에 관하여, 선정자 G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886/936303 지분에 관하여 각 2020. 3. 17.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명의신탁 해지일을 2020. 3. 13.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종중은 H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1971. 11. 10. I, J, 망 K, 망 L, 망 M, N 명의로 각 1/6 지분씩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망 L가 2019. 2. 25. 사망하여, 2019. 7. 17. 피고(선정당사자) B, 선정자 C, D, E, F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5888/936303 지분, 선정자 G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5888/936303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14, 2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3 내지 10, 13, 15 내지 17, 2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2019. 9. 4. 이 사건 부동산 중 I, J, N의 지분 전부, 망 M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O의 지분 전부, 망 K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P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9. 8. 31.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,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련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온 점, N, J 등은 2001. 9. 28.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위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용지매매보상금을 원고 종중이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, 원고 종중은 I, J, 망 K, 망 L, 망 M,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되고,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로서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(이하 '피고들'이라 한다)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2020. 3. 17.(편의상 피고들에게 소장부분이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을 해지일로 삼았다)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정민

별지목록

1. 경기도 광주시

임야 312101 m²

-끝-

선 정 자 명 단

1. B
2. C
3. D
4. E
5. G
6. F. 끝.

